

1833-9030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순창서 C형 간염 발생

한번 감염되면 대다수가 만성으로 진행... 위험 커  
 피로·구토 증세... 치명적인 경우 사망 가능성도  
 보건당국 역학조사 나서 "병원 내 감염 아닌 듯"

순창에서 C형 간염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 31일 전북도보건당국에 따르면 순창에서 C형 간염 환자 200여명이 한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했다. 이들 환자들의 진료 기록을 확인한 결과 일부는 불법 치료와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불법 치료 과정서 C형 간염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는 등 광범위한 역학조사에 나섰다.  
 순창지역에서 대거 발생한 C형 간

염은 바이러스에 의해 간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한번 감염되면 대다수가 만성으로 진행,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쉽게 피로를 느끼거나 입맛이 없어지고 구역·구토 증세를 느낄 수 있다. 근육통 및 미열이 발생하거나 소변의 색깔이 진해질 가능성도 있다.  
 심한 경우 감염자의 피부나 눈이 노랗게 변하는 황달이 나타나기도 하며, 치명적인 경우라면 사망에 이를 위험도 있다.  
 C형 간염에 걸린 뒤 우리 몸에서 자

연적으로 사라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연간 1% 미만 수준이다.  
 일단 한번 감염되면 대부분 만성 C형 간염으로 진행돼 간경변증 및 간세포암종(간암)이 발생할 가능성을 주의해야 한다.  
 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건자료 빅데이터를 통해 C형 간염 환자들이 순창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위한 진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보건당국은 이번 C형 간염 환자가 해당 의원 내에서 집단으로 감염된 것이 아닌 과거 감염자들이 이 의원에 내원해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병원 내 감염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C형 간염이 발생한 것은 맞지만 어떠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감염이 나타났는지는 역학조사 중"이라며 "현재까지 밝혀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지난달 31일 알바노조 전주지부가 전북대학교 구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지역 아르바이트생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해 노동권리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 전주 알바생 24% "최저 임금? 택도 없다"

#전주 A프렌차이즈 편의점에서 일하는 B씨는 시급 4,500원을 받고 매일 6시간씩 일하지만 생계에 필요한 비용이 턱없이 부족해 주말에도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일주일 중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매일 일하면서 살고 있다는 뜻이다.  
 전북대 인근 카페에서 일하는 C씨 역시 상황은 다를 바 없다.  
 C씨는 주5일 50시간 이상을 일하면서도 휴게시간은 물론 야간수당, 연장수당과 같은 가산임금과 주휴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시간 대비 임금은 적어

일부 근로기준법 명시된 주휴수당·야간수당도 몰라

알바노조 전주지부준비위 "정당한 노동으로 봐야"

이처럼 전주지역 아르바이트 노동자 4명 가운데 1명은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80%는 법적인 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31일 알바노조 전주지부 준비위원회와 '송곳' 서포터스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14일에서 지난달 23일까지 전북대 일

저 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다.  
 상당수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생계유지 등을 위해 장시간 노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현실은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주휴수당은 15.7%, 야간수당은 17.4%만 받고 있고 이 같은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노동자도 각각 18.3%와 9.6%다.  
 휴게시간을 지키고 있다는 응답은 40.6%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도 40.5%에 불과하며 4대 보험 가입률은 21.2%에 그쳤다.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62.9%는 최저 임금이 부족하다고 답했고 적당하다는 11.4%에 불과했다.  
 알바노조 전주지부준비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노동 조건과 임금 등에 대해 현장에서 잘 알지 못하고 있고 지켜야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들은 또 아르바이트를 단순한 학생들의 용돈 벌이로 볼 것이 아니라 생계를 위한 정당한 노동으로 봐야 하는 등 아르바이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 검찰 고강도 자구책 보니... 실효성은 '글쎄'

직원 주식투자 금지·'변론' 관리대장 작성 방안 등에서 의문

검찰이 최근 연이어 불거진 법조비리 사건으로 추락한 신뢰를 얻기 위해 자구책을 내놨다.  
 조직 분위기를 쇠신할 수 있는 고강도 대책이라는 게 검찰의 자평이다. 하지만 곳곳에 제도적 '허점'이 많아 기대만큼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지난달 31일 대검찰청 검찰개혁추진단(단장 김주현 대검찰청 차장)이 발표한 검찰 개혁방안은 내부청렴을 강화하고 법조비리를 방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방안 중 하나로 대검 법무패부를 비롯해 특수부, 금융조사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파견 등 특정부서 근무자의 주식거래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방안은 나름대로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검찰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대검공무원행동강령'보다 한층 강화된 조치라는 분석도 있다.  
 증권업무를 직접 다루는 전문기관

에 못지않은 제한이 가해진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금융위원회는 4급 이상 직원의 주식투자를 전면금지하고 5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차명거래금지와 1개 계좌를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도 비상장주식에 대한 거래 금지와 근로소득 50% 초과 거래 금지 등 방법에 대한 금지가 주를 이루고 원칙적으로 주식투자를 금지한다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특정부서 검찰 직원의 주식투자 금지는 논란의 불씨를 남겨두고 있다. 당사지만 주식거래 금지 적용을 받고 배우자나 다른 가족은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검찰은 운용의 묘를 찾겠다는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공무원한테 청렴, 성실 의무 있지만, 가족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 어렵지 않겠느냐"며 "실효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다. (공무원) 본인에게 못 하게만 해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론' 관리대장을 만들기로 한 방안도 실효성에 의문이 들긴 마찬가지다.  
 사적 친분을 이용해 전화를 걸어 사건을 암시하거나 우회적인 표현으로 변론 의사를 내비치는 경우 당사자가 이를 명확히 구별이 쉽지 않아 보인다.  
 관리대장 자체를 검사 스스로 작성하는 것도 문제의 소지를 남기고 있다. 충실하고 엄격하게 통화내역을 작성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것이다.  
 실명이나 익명을 통한 내부제보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알바만큼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결국 검찰 조직원, 개인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대검은 이번에 발표한 첫 개혁안은 법조비리와 내부 청렴과 관련한 1차 발표로 최종 개혁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뉴시스

▶ 매일 INDEX

2면 김영란법 시행 대비 대비책 마련

**추석! 추석!**  
**우체국에서 진뭍을 선물하세요!**  
 우체국 쇼핑 최대 30% 할인 · 냉장고, 세탁기, UHD TV 등 경품 이벤트  
 이벤트 기간 2016. 8. 22.(월) ~ 9. 7.(수) 17일간  
 전북지방우정청 Post Pay